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6-198호

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(부당이득) 반환금 납부고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, 제62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(부당이득) 반환금 납부고지서, 독촉고지서, 압류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 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11. 19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인

1. 건　　명: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(부당이득) 반환금 납부고지서, 독촉고지서, 압류통지서 등 반송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　　거: 고용보험법 제35조, 제62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항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 붙임(공시송달자 명단) 참조
4. 공고 기간: **2026. 11. 19. ~ 2026. 12. 3.(15일간)**
5. 반환금 납부 안내: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에 직접 방문(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, 3층) 또는 전화(053-667-6318)로 납부고지서 등을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